

제3028호  
2023. 9. 27.

발행인 :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김길성  
편집인 : 홍보담당관 주재봉  
전화 :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자치법규

선	기관 의 장
람	

# 구 보

● 자치법규

[입법예고]

- 제2023-86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2
- 제2023-87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8

● 공 고

- 제2023-878호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공람 공고 ..... 11
- 제2023-88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25
- 제2023-885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자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수시분,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30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	--	--	--	--	--	--	--	--	--	--	--	--	--	--	--	--	--	--	--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69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호 및 복구 지원 비용 구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피해 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조항 추가 및 신설(안 제58조)
- 나. 사회재난으로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안 제59조)
- 다. 사회재난으로 원인 제공자에 구상에 따른 책임(안 제6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생활안전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과, 전화 : 02-3396-4472, 팩스 : 02-3396-8849, email : vxyz12@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장 총칙

제30조제1항 중 “영 제21조의2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1조의2”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로 한다.

제5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금액 등의 지원 기준은”을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으로, “고시한”을 “통보한”으로,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 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를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6조 앞에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을 삭제한다.

제71조를 제73조로 하고, 제69조를 제71조로 하며, 제67조를 제69조로 하고, 제65조를 제67조로 하며, 제63조를 제65조로 하고, 제61조를 제63조로 하며, 제59조를 제61조로 하고, 제59조 및 제6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9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60조 앞에 “제2절 생활안전지원 등”을 삭제한다.

제62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절 생활안전지원 등

제72조를 제74조로 하고, 제70조를 제72조로 하며, 제68조를 제70조로 하고, 제66조를 제68조로 하며, 제64조를 제66조로 하고, 제62조를 제64조로 하며, 제60조를 제62조로 한다.

제62조(총전의 제60조)제1항 중 “생활안전지원 및 간접지원”을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으로 한다.

제63조(총전의 제6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0조제6항”을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64조(총전의 제62조) 본문 중 “제60조제6항”을 “제62조제6항”으로 한다.

제65조(총전의 제63조) 중 “제60조제6항”을 “제62조제6항”으로, “제59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장 총칙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제30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2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제32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8조(지원기준)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 통보한 -----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
<신 설>	③ 제1항 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 설>	제59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구청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5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제60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59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59조 (생 략)	제61조 (현행 제59조와 같음)
제2절 생활안정지원 등	<삭 제>
<신 설>	제2절 생활안정지원 등
제60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	제62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61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63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 제62조제6항-----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2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0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	제64조(지급방법) ----- 제62조제6항----- -----

<p>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p>----- ----- ----- ----- -----</p>
<p>제63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60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8조 및 제59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p>	<p>제65조(환수) ----- 제62조제6항----- ----- ----- 제61조----- -----</p>
<p>제64조·제65조 (생 략)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lt;신 설&gt; 제66조 ~ 제72조 (생 략)</p>	<p>제66조·제67조 (현행 제64조 및 제65조와 같음)     &lt;삭 제&gt; 제6장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등 제68조 ~ 제74조 (현행 제66조부터 제72조까지와 같음)</p>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70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최·주관 자 없는 행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 등의 의무(안 제3조~제4조)
- 다. 적용 범위와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안 제5조~제6조)
- 라. 안전 점검과 긴급안전 조치(안 제7조~제8조)
- 마.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및 관계기관의 협력(안 제9조~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3년 10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생활안전과장, 주소 :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생활안전과, 전화 : 02-3396-4483, 팩스 : 02-3396-9085, email : ksb20@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중구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 및 구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의 행사를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의무) 구민과 구의 관할구역 내 각종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구에서 열리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호의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1. 구 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옥외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 ② 그 밖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
  - ③ 제1항 각호에 따른 옥외행사 중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참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
  - ④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개요(일시, 장소, 주최·주관, 주요내용, 참가예상인원 등)
2.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3.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4. 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 밀집 시의 대처요령
5.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출자·출연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구 또는 출자·출연기관이 후원하는 행사
3. 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구청장은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가 열리기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중단 등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열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
  2. 안전관리요원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를 배치할 것
- 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④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안전관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협력) ①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조 등을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에 응급·구조 및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78호

##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재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65호(2006.10.26)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제2009-107호(2009.3.19)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19호(2014.03.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120호(2020.09.16.)로 사업시행계획인가(5-1구역),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1-72호(2021.06.02.)로 사업시행계획인가(5-3구역)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세운 5-1·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한 변경(안)을 주민공람(2023. 04.19~2023.05.02.)하였으나 2023년 제7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결과(2023.09.05.) 등을 반영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재공람합니다.
2. 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9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I.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 1.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세운재정비촉진지구	종로구 종로3가동 175-4번지 일대	439,356.4	-	439,356.4	-

#### 2. 촉진구역별 사업계획

가. 촉진구역 결정조서(세운 5구역) : 변경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세운 5-1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3,210.5	도시환경정비사업	-
	세운 5-2구역	중구 주교동 145-6번지 일원	2,940.5		
	세운 5-3구역	중구 산림동 141번지 일원	3,653.9		
변경	세운 5-1·3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4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5-1, 5-3구역 통합 및 5-2구역 잔여지 편입
	준치관리구역	중구 산림동 82-3번지 일원	1,473.5	-	산생지식산업센터

### ■ 변경사유

- 5-1·3구역 : 고밀·복합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적정 규모 단위로 구역 통합 및 정비
- 5-2구역 :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라 준치관리구역 전환

### 3. 정비계획 (세운5-1·3구역)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구 분	명칭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6,864.5	증) 807.9	7,672.4	100.0	5-2구역 잔여부지 편입
계획 기반 시설	소계	1,567.1	감) 986.7	580.4	7.6	-
	도로	385.0	감) 45.5	339.5	4.5	-
	경관녹지	1,182.1	감) 1,182.1	-	-	-
	공공공지	-	증) 240.9	240.9	3.1	-
택지 (획지)	소계	5,297.4	증) 1,794.6	7,092.0	92.4	-
	획지1	2,494.2	증) 3,930.4	6,424.6	83.7	사업대지
	획지2	2,803.2	감) 2,135.8	667.4	8.7	공공구역

나. 용도지역·지구 결정에 관한 계획

- 1) 용도지역 : 변경
- (1)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672.4	-	7,672.4	100.0	-
일반상업지역	7,672.4	감)6,424.6	1,247.8	16.3	-
중심상업지역	-	증)6,424.6	6,424.6	83.7	-

■ 변경사유 : 도심부 녹지공간 확보 및 거점 육성 등 전략적 개발 유도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2) 용도지구 : 변경없음

- (1) 방화지구 결정조서 (사업시행계획인가시 폐지)

구분	지구명	위치	내용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방화지구	세종로~청계천~동대문간	방화지구(노선)	42,609.0 (923.4)	건교부고시 727호(63.12.13)	청계천

※ ( )는 구역 내 면적임

다. 도시계획시설(설치)계획 : 변경

1)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사

구분	구도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16.5	집산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130호 (03.05.26)	청계천변 북측도로
변경	중로	3	1	12~16.5	집산도로	5,390 (471)	세종로광장	고산자로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130호 (03.05.26)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2	12	국지도로	197 (20)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2구역 전면도로
변경	중로	3	2	12	국지도로	197 (20)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조정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구역통합에 따른 폐지

■ 변경사유

- 중로 3-1 :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선형 조정
- 중로 3-2 : 5-2구역 일부편입에 따른 선형조정
- 소로 3-8 : 5-1·3구역 통합에 따른 도로 폐지

2) 공간시설

(1) 녹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90-20	668.1	감)668.1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폐지	3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41-1	1,192.4	감)1,192.4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변경사유 : 기반시설의 효용성 고려하여 경관녹지 폐지

(2)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사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	중구 산림동 90-4	-	증)240.9	240.9	-	-

※ 추후 5-4구역 사업시행자는 중로3-2 도로 개설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공공공지를 재조성할 것

■ 변경사유 : 5-2구역 잔여지 정비

라.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계획 : 변경

구분	구역명	구역면적 (㎡)	획지면적 (㎡)	계획기반시설(㎡)			무상양도 국·공유지 (㎡)	순부담 면적 (㎡)	순부담률 (%)	비고
				기반시설	건축물 (환산면적)	세운상가매입 (환산면적)				
변경	5-1·3	7,672.4	6,424.6	1,247.8	674.7	760.5	933.3	1,749.7	21.4	-

※ 계획 기반시설 내 국·공유지와 용도 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무상양도 대상으로 순부담률 산정시 제외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 계획 : 변경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후	
신설	세운 5-1·3 구역	7,672.4	획지1 (사업대지)	6,424.6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67	-	-	67	-	-
			획지2 (공공용지)	667.4	중구 산림동 82-17번지 일원						

바. 건축시설계획

구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치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세운 5-1 ~ 5-3 구역	9,804.9	대지	5,297.4	중구 산림동 82-5번지 일원	공동주택, 업무, 판매 문화집회 등	60 이하 (저층부 80이하)	600/800/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준높이</li> <li>- 간선부 80m</li> <li>- 이면부 60m</li> <li>• 최고높이</li> <li>- 간선부 90m (기반시설 제공완화)</li> <li>- 이면부 70m (기반시설 제공완화)</li> </ul>
변경	세운 5-1·3구역	7,672.4	획지1 (사업대지)	6,424.6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업무	50 이하	1,519이하	170m이하
			획지2 (공공용지)	667.4	중구 산림동 82-17번지 일원	공장	60 이하 <sup>1)</sup>	800이하	-
건축물 배치 등에 관한 계획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지정</li> <li>- 청계천변 5m, 세운상가변 3m, 내부도로변 3m</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대상지 북측 청계천변 : 5m</li> <li>• 건축가능범위 지정</li> </ul>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방형 녹지율 : 41.8%(2,685.5㎡) (의무비율 40% 이상)</li> <li>• 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공공지 면적 : 1,285.52㎡ 이상 (추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li> </ul>						

1) 건폐율 기준 완화 적용(3,000㎡ 미만의 소규모 대지)

1) 용적을 계획

구분	산정내용						
	계 (구역면적) (㎡)	획지 (㎡)	계획기반 시설(㎡)	건축물 (환산면적)	세운상가매입 (환산면적)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토지이용계획	7,672.4	6,424.6	1,247.8	674.7	760.5	274.3	659.0
공공시설부지 제공면적 (순부담)	• 계획기반시설 + 건축물(환산면적) + 세운상가매입(환산면적) - 계획기반시설 내 기존 국·공유지 - 획지 내 용도폐지 국·공유지 = 1,247.8㎡ + 674.7㎡ + 760.5㎡ - 274.3㎡ - 659.0㎡ = 1,749.7㎡ (21.4%) ※ 계획기반시설 면적 : 공공용지(667.4㎡), 도로(339.5㎡), 공공공지(240.9㎡)						
기준용적률	• 기준용적률 : 600%						
허용용적률	• 허용용적률 : 400%						
	구분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600% × (758.18㎡/6,424.6㎡) × 2]			정률 (2.0)	141.6%
	공동개발		구역 통합 등에 따른 공동개발 시			정률 (50%)	50%
	지구통합 관리운영		지구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 제출 및 협약 완료 시			정률 (20%)	20%
	상가 세입자 대책 수립	대체 영업장 확보	공사기간 내 확보/운영 시(재수용비용 20%이상)			정률 (30%)	30%
		세입자대책 사전이행	세입자 대책 조기 이행 시			정률 (0.05)	20%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600% × (3,167.0㎡/6,424.6㎡) × 0.3]			정률 (0.3)	88.7%
	공인 시설	특정층(최상층)개방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 조성 시 [600% × (1,217.7㎡/6,424.6㎡) × 0.2]			정률 (0.2)	50%
		저층부 개방공간	저층부 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 개방 시 [600% × (978.3㎡/6,424.6㎡) × 0.3]			정률 (0.3)	
상한용적률	• 공공시설 기부채납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 : 312%						
	상한용적률 : 319%		• 가중치 : 사업부지 용적률에 대한 공공시설 등 부지의 해당 용적률 = 800% / 1,000% = 0.8 • α토지 : 공공시설 등(토지) 제공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1,247.8㎡-933.3㎡)/6,424.6㎡ = 0.049 • β건축물 : 건축물 환산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674.7㎡/6,424.6㎡ = 0.1050 • γ건축물 : 세운상가매입면적 / 공공시설 등 부지(토지) 제공 후 대지면적 = 760.5㎡/6,424.6㎡ = 0.1184				
	• 공공시설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 허용용적률×(1+1.3×가중치×α토지) + 허용용적률×(1+1.2×β건축물) + 허용용적률×(1+1.2×γ건축물) • 대상지 ⇒ 1,000%×[(1+1.3×0.8×0.049)]+ 1,000%×[(1+1.2×0.1050)]+ 1,000%×[(1+1.2×0.1184)] = 1,319%						
	• 공개공지 초과조성에 따른 상한 용적률 : 200%						
완화 용적률 : 200%		•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 1,000%×(1,285.52㎡/6,424.6㎡)					
허용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면적 / 대지면적)		• 의무면적 : 대지면적의 10%(642.46㎡) • 조성면적 : 대지면적의 30%(1,927.98㎡)					

2) 상가군 확보에 관한 계획

○상가군은 중장기적으로 확보 후 단계적 녹지축으로 조성한다.

○사업시행자는 용적을 인센티브 계획과 연계하여 상가군 매입 부담률에 상응하는 상가군을 매입하여 준공 전까지 공공임대상가,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공공기여 하도록 한다.

계획 기준	○상가군 매입 : 순부담률 9.3% (환산부지면적 760.5㎡) ▶ 매입 상가군은 녹지공간 조성 전까지 활용을 위해 공공임대상가/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제공
산출 근거	○5-1·3구역 상가군 매입 부담률 : 9.3% ▶ 순부담률 - 토지·건축물 부담률 = 21.4% - 12.1% = 9.3% (환산부지면적 760.5㎡) ○매입비용 : 약 196억원 ▶ 환산부지면적 × 부지가액 <sup>1)</sup> = 760.5㎡ × 25,818,095원/㎡ = 19,634,661,247원

※ 1) 부지가액(5-1·3구역 개별공시지가 산술평균 2배, 2023)은 추후 감정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4. 환경보전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및 환경성 검토결과

가.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분	계획내용	비고
도시경관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도시경관에 적합하도록 계획 수립 • 주요 도로변에서의 조망분석으로 주변 건축물 등 조화로운 도시경관 유도	-
환경보전	• 공사 시 사업부지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가연성, 불연성 등 분리수거 할 수 있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 • 폐기물 수거는 중구 폐기물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	-
재난방지	• 안정구배를 유지하고, 벽면의 상·하단에 배수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토사 유출 방지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으로 방재계획 수립	-



나. 환경성 검토

검토향목		목표기준	준수여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 반영사항	비고
자연 환경	생태 면적률	35% 이상	○	현재 불투수 포장지역임	자연·인공지반녹지, 부분포장, 투수포장 등과 식재를 적용해 생태면적률 35.03% 계획	
	생태 네트워크	녹지 연결성 확보	○	대상지는 노후화된 상업 지역으로 녹지 공간이 조성 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 계획을 반영하여 주요 녹지 연결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녹지네트워크 구축	
	토지이용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는 현재 일반상업지역임	금회 중심상업지역 및 일반상업지역 변경 대상지는 획지용지 및 기반시설 용지계획	
	지형변동	지형·지질 변동 최소화	○	비교적 평탄한 지형	현 지반고를 고려 지형순응형 계획	
	비오름	비오름 보전 등급 향상	○	비오름유형평가 4등급 개별 비오름 평가 제외	조경녹지 및 투수성 포장으로 비오름기능 향상	
생활 환경	일조	일조침해 최소화	○	건축물 신축시 주변 영향 예상	남북 건축배치로 주변에 미치는 일조영향 최소화	
	바람	바람길 확보	○	저층·노후 건축물 밀집지로 바람길 미확보	대상지 서측과 남측 개방형 녹지 통하여 바람길 확보	
	열	열환경 영향 최소화	○	지표면 열수지 변화 등으로 대상지 주변지역에 열섬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개방형 녹지 41.8%, 공개공지 30%, 조경면적 15.41% 확보해 열환경 영향 최소화	
	에너지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	○	에너지사용량 증가 예상	녹색건축물 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신재생에너지 14%이상, ZEB 5등급 적용함	
	경관	Skyline 보전	○	스카이라인 변화 예상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높이 169.8m 건물 배치	
	휴식 및 여가공간	휴식·여가공간 최대확보	○	주변 휴식·여가공간 부족	대상지 서측 및 남측 공개공지 30%, 개방형녹지 41.8% 조성	
추가	폐기물		○	기존 건축물 철거시 폐기물 발생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거 분리 배출계획수립 폐유 보관 및 반출내역 작성하여 관리 예정 생활폐기를 수거업체 계약하여 분리배출 실시예정	
	소음 및 진동		○	인근도로에 의한 영향 발생지역	가설방음판넬 설치하여 주변 지역 소음영향 최소화 저진동 건설기계 사용하여 진동영향 최소화 계획	

5. 정비사업 시행계획

구분	내용	비고
사업시행방법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주체	• 토지 등 소유자	-
사업시행 예정시기	• 촉진계획(변경)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4년 이내	-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고
대상지 남측 덕수중학교 입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3구역 남측 일부가 덕수중학교 상대보호구역에 해당되나,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학교 북측으로 고층 건축물(을지트윈타워) 및 도로 등에 의해 충분히 이격되어 있어 건축물 신축에 따른 일조 등의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li> <li>향후 사업시행인가시 교육영향평가 심의 진행 예정</li> </ul>	약 185m 이격

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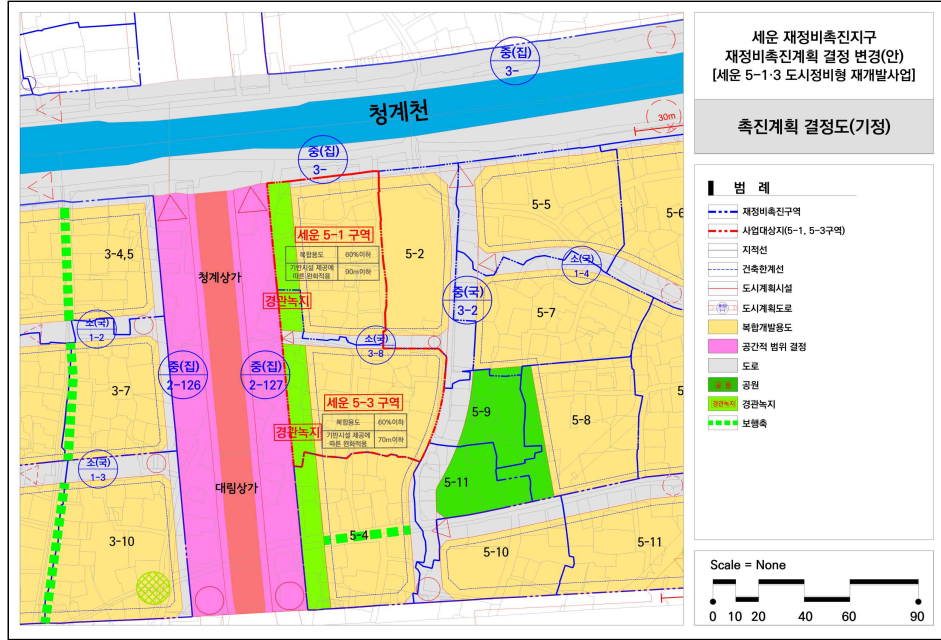
정비구역 현황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계획		
	착공 전	착공 ~ 공사 완료	범죄예방설계 적용
임차세대 퇴거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펜스 설치 및 유지·관리</li> <li>1일 오전·오후 1회 우범 지역순찰</li> <li>방범용 CCTV 설치 운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규정 준수 안전 시공</li> <li>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공사비 계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범용 CCTV는 사각지대 설치</li> <li>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사이에 전이공간을 설치하여 공간의 인시성 강화</li> <li>수목의 식재로 사각지대나 생기지 않도록 수목의 간격을 유지하여 계획</li> </ul>

8. 토지 등 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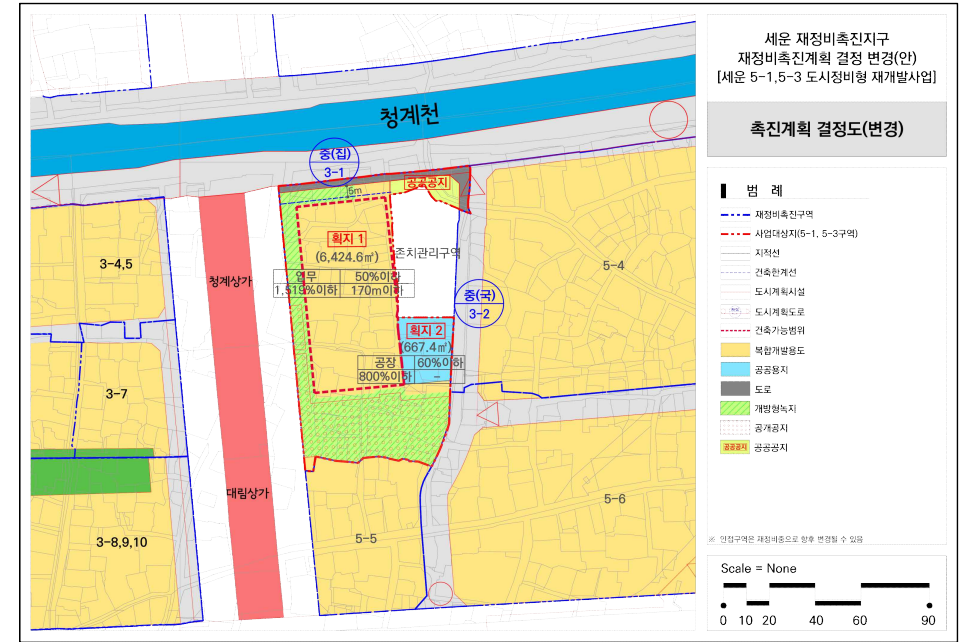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추정 비례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비례율 산정방식 : (총 수입 - 총 지출) / 종전자산 총액 × 100%</li> <li>추정비례율 : 106.44% ⇒ (10,278억 - 8,822억) / 1,368억 × 100% = 106.44%</li> <li>- 총 수입 추정 : 10,278억</li> <li>- 총 지출 추정 : 8,822억</li> <li>- 종전자산총액 추정 : 1,368억</li> </ul>
추정 분담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분담금 산정방식 = 권리자 분양가 추정액 - (종전자산 추정액 × 추정비례율)</li> <li>분양가액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이후 설계 확정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후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li> </ul>

9. 촉진계획 결정도 변경(안)

【촉진계획 결정도(기정)】



【촉진계획 결정도(변경)】



※ 인접구역은 재정비중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음

II. 지구단위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신설

지구명	위치	면적(㎡)			비고
		기 정	증 감	변 경	
5-1-3구역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대	-	증) 7,672.4	7,672.4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7,672.4	-	7,672.4	100.0	-
일반상업지역	7,672.4	감)6,424.6	1,247.8	16.3	-
중심상업지역	-	증)6,424.6	6,424.6	83.7	-

나. 기반시설 결정(변경)조서 : 변경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	12~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30호 (03.05.26)	청계천변 복측도로
변경	중로	3	1	12~16.5	집산 도로	5,390 (471)	세종로 광장	고산자로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130호 (03.05.26)	선형조정
기정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20)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5-2구역 전면도로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197 (20)	을지로4가 30-2	주교동 145-6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선형조정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74	산림동 112-5	산림동 181-1	일반 도로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구역통합에 따른 폐지

2)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90-20	668.1	감)668.1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폐지	3	녹지	경관녹지	산림동 141-1	1,192.4	감)1,192.4	-	서울시고시 제2014-119호 (14.03.27)	-

3)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	공공공지	-	중구 산림동 90-4	-	증)240.9	240.9	-	-

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구역	획지	면 적(㎡)			비 율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5-1-3구역	소 계	-	증) 7,092.0	7,092.0	92.4	-
	획지1	-	증) 6,424.6	6,424.6	83.7	사업대지
	획지2	-	증) 667.4	667.4	8.7	공공용지(공공구역)

나.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결정조서

1)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결정조서

구역	획지	용도	내용	비고
5-1-3 구역	획지1 (사업대지)	지정 용도	업무시설 및 교육연구시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12에 해당하는 업종	전용면적 4,667.04㎡ 이상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획지2 (공공용지)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1조에 따른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 32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2) 건축물 개발밀도(건폐율, 용적률, 높이)

가) 건폐율 계획

구분	건폐율	비고
획지1(사업대지)	50%	중심상업지역
획지2(공공용지)	60%	일반상업지역

나) 용적률 계획

구분	용적률			비고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획지1(사업대지)	600% 이하	1,000% 이하	1,519% 이하	중심상업지역
획지2(공공용지)	600% 이하	800% 이하	-	일반상업지역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사항

구분	인센티브 완화 요건	산정방식	완화량
녹지 생태공간	개방형 녹지 의무확보기준 초과설치 시 [600% × (758.18㎡/6,424.6㎡) × 2]	정률 (2.0)	141.6%
공동개발	구역 통합 등에 따른 공동개발 시	정량 (50%)	50%
지구통합 관리운영	지구통합관리 운영을 위한 계획 제출 및 협약 완료 시	정량 (20%)	20%
상가 세입자 대책 수립	대체 영업장 확보	공사기간 내 확보/운영 시(재수용비율 20%이상)	정량 (30%)
	세입자대책 사전이행	세입자 대책 조기 이행 시	정률 (0.05)
도시경제활성화 유도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도입 시 [600% × (3,167.0㎡/6,424.6㎡) × 0.3]	정률 (0.3)	88.7%
공익 시설	특정층(최상층)개방	건축물 최상층에 공공에게 개방된 공간 조성 시 [600% × (1,217.7㎡/6,424.6㎡) × 0.2]	정률 (0.2)
	저층부 개방공간	저층부 녹지와 연계되는 저층부 개방 시 [600% × (978.3㎡/6,424.6㎡) × 0.3]	정률 (0.3)

■ 상한용적률 완화 사항

구분	용적률 완화		비고
	공공시설 기부채납	공개공지 초과조성	
획지1	319%	200%	총 519%

다) 높이 계획

구분	높이기준	비고
획지1	170m 이하	중심상업지역

다. 건축물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건축한계선	북측 청계천로변	• 대지경계선으로부터 5m 후퇴
건축가능범위	도면참조	• 개방형녹지 확보를 위한 대지경계선 내 건축가능범위 별도 지정

라. 기타 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대지 내 공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계획내용
공개공지	대상지 서측, 남측	• 조성규모 및 설치기준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26조에 따름 • 개방형 녹지 및 도심공원과의 연계성 증진을 위해 대상지 서측과 대상지 남측에 공개공지 조성
전면공지	북측 청계천로변	• 건축한계선 후퇴부 보도형 전면공지로 조성 • 건축한계선으로 확보되는 전면공지는 북측 청계천로변 개방형녹지와 연계하여 조성

2) 개방형녹지에 관한 결정조서

구분	적용위치	면적	계획내용
개방형 녹지	대상지 북측, 서측, 남측	2,685.5㎡	• 개방형녹지 - 조성계획 : 대상지 북측, 서측, 남측 녹지 조성 - 유지관리 : 관리주체는 개방형녹지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실시(녹지생태도심 마스터플랜에 적합하게 운영·관리)

※ 개방형녹지 면적 산정시 개방형녹지 심의기준 2-2에 따라 실효성 없는 면적 제외

※ 개방형녹지의 개략적 범위 및 위치를 정한 것으로 추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서 시 주관부서와 협의 하에 녹지의 형상은 조정가능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84호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의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6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 알림」,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을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1. 공고기간: 2023. 9. 26. ~ 2023. 10. 11.(15일간)
- 2. 공고대상: 붙임 참조
- 3.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 경과알림

1.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독촉고지하오니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빠른시일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받으시기 전 연장신청 필요(연장신청 안할시 과태료부과 대상)

2.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예신청할 수 있으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제11호 및 제94조제6항, 같은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15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예신청 조건】

- 교통안전공단 수검안내문 미수령시(연장신청 후 검사요청)
- 이륜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 등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에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과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 환경과(hty3458@junggu.seoul.kr)에 제출

3.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1. 귀하의 이륜자동차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의7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하오니 명령 이행기간 이내에 가까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이 명령서를 받고도 명령이행기간 이내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제1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 명령서를 받기 전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았거나 전출·이전·말소등록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자치단체에 전화,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이륜자동차 검사소 안내

교통안전공단 이륜자동차 검사소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비고
서울	성동	성동구 가람길 113 (송정동)	02-2244-2556	평 일: 9~18시 토요일: 9~13시 ※ 토요일은 예약전만 검사
	상암	마포구 구룡길 15 (상암동)	02-309-7033	
	성산	마포구 월드컵로 220 (성산동)	02-306-5986	
	구로	구로구 경인로 113 (오류동)	02-2037-6000	
	강남	강남구 현릉로 745길 13 (울현동)	02-459-2844	
	노원	노원구 공릉로 62길 41 (하계동)	02-948-4121	

민간검사소(지정정비사업자)

지역	검사소명	도로명 주소	대표전화
서울	(주)에이원모터스	성동구 광나루로 192(성수동1가)	02-463-0027
	(주)해성자동차	성동구 이차산로 147(성수동2가)	02-465-4111
	베스트바이크(성동)	성동구 성수이로26길 25(성수동2가)	02-466-5782
	성수현대서비스	성동구 이차산로 171(성수동2가)	02-464-6464
	(주)문래자동차검사사업소	영등포구 문래로 31(문래동6가)	02-2679-1141
	(주)영등포자동차정비검사소	영등포구 문래로 55(문래동6가)	02-2679-1230
	케이모터스(서울)	중랑구 망우로26길 49(면목동)	070-8959-5828
합성자동차(주)	강북구 도봉로 113(미아동)	02-989-9720	

한양자동차 정비(주)	도봉구 도봉로136다길 32(창동)	02-903-3900
명진종합오토바이	마포구 민재로 132-2(공덕동)	02-703-9259
강서이륜차검사소	강서구 양천로 400-12(가양동)	02-6949-6934
강서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372(가양동)	02-3664-4568
(주)플라임모터스	강서구 방화대로 22(외발산동)	02-2667-0456
(주)신동성자동차	강서구 양천로 528(등촌동)	02-3663-4567
현대오토서비스	금천구 두산로 3 (독산동)	02-858-8600
서울모터스(양천)	양천구 북동로1길 42 (신정동)	02-2655-2055
오엘모터스	구로구 경인로 115(오류동)	0507-1313-1063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검사소, 민간(지정) 검사소에서**만 가능(민간(지정) 검사소 사이트: [www.cyberts.kr](http://www.cyberts.kr) 또는 [www.car365.go.kr](http://www.car365.go.kr) 참고)

※ **검사예약, 검사시간, 검사비용**은 해당 지정정비사업소에 문의

□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신청서 없음)
- 의무보험영수증(또는 보험증권)
- 검사료 (검사시간 내 미수검 → 과태료 최대 20만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알림 및 명령 반송분 공시총달 공고대상자 명단**

□ 자치단체 : 서울시청/서울 중구청							2023.9.26.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고	
1	서울중타4935	홍*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35, ***** (충무로4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2	서울중타8562	박*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3	서울성동사0249	이*재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4	경기하남다6769	정*영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5	서울중카6976	NGUYEN *** KHOA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7길 21-9, ***** (장충동2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1차독촉장	
6	서울용산차1010	김*환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90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1차독촉장	
7	서울성동차0767	이*운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7길 18, ***** (황학동, 블루카운티Ⅱ)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1차독촉장	
8	서울강북파4647	임*근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0가길 18, *** (남산동2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수취인불명	1차독촉장	
9	서울용산자9524	KIM *** HEW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6, *****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0	서울중자6344	(주)페***텍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22-24, ** (충무로5가, 대박빌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이사불명	2차독촉장	
11	서울중자7060	김*식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2길 7-4, **** (충무로5가, 충무로현대프레스타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이사불명	2차독촉장	
12	서울중타4935	홍*석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35, ***** (충무로4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3	서울중타8562	박*문	서울특별시 중구 청구로22길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4	경기하남다6769	정*영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 (황학동, 롯데캐슬 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2차독촉장	
15	서울중카3277	이*환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16	서울강남하1909	오*영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9길 49-15, ****(항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17	서울중카8950	김*기	서울특별시 중구 왕십리로 407, *****(신당동, 신당파인힐 하나유보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18	서울용산자9524	KIM JIN HEW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46, *****(회현동2가, 쌍용남산플래티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19	서울중자6344	(주)페***텍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45길 22-24, **(충무로5가, 대박빌딩)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20	서울중자7060	김*식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12길 7-4, ****(충무로5가, 충무로현대프레스타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명령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3-885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수시분, 납부독촉)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간 내 받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9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 수시분) 통지를 소유자에게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인해 송달이 불거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3년 9월 26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2023. 9. 26. ~ 2023. 10. 11.(15일간)

2. 공고대상: 불입참조

3. 공고내용

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전통지)

-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에 의거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기한내 받았어야하나, 지연검사(사용폐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예정입니다.
-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에 앞서 그 내용을 사전통지하니 공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정된 대로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견제출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20%) 받을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 한시기를 바랍니다.**
- 아울러 아래 추가 감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에는 처분 금액의 50%를 추가로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자는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제출 및 증빙자료 제출하여야 감액처리 가능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추가감경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3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수시분 부과 알림

1.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규정을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하여 같은 법 제94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니 **기한 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매 1개월마다 1.2%의 증가산금이 60개월(72%)까지 가산되어 **최대 75%까지 추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만일 이 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건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독촉 고지 알림

1.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 제2항 규정을 위반(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하여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았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세징수법 제32조(독촉과 최고)에 의거 납부 독촉하니 **기한 내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의거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청 환경과(☎02-3396-5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제출서(사전통지용),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수시분 부과용)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의견	(전화번호: )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의견제출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서

신청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차량	차량번호		차 량 명		
	소 유 자		신청인과의 관계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p>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하오니 관할법원에 이송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위 신청인 인</p> <p>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p>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과태료 사전통지, 수시분 공고대상자 명단

□ 자치단체 : 서울시청/서울 중구청							2023.9.26.
No.	이륜차번호	소유자명	소유자 주소	위반사항	반송사유	비 고	
1	서울중로아6670	장*훈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14길 11,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2	서울성동하2688	김*민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주소불명	과태료 (사전통지)	
3	서울중타7482	박*욱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7길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4	서울강남가2223	안*민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63, ****(황학동, 한양립스 이노와이즈)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과태료 (사전통지)	
5	서울금천차2088	설*경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88가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1	서울강남하2063	WANG *** CHANG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400, ***** (황학동, 롯데캐슬베네치아)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2	서울중사2505	정*규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32, ***** (신당동, 남산타운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3	서울중차6298	정*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30, ***** (신당동, 약수하이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4	서울성동하7496	최*홍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15길 36-6, ****(황학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5	서울중차6823	이*철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 (신당동, 현대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6	서울중아1695	최*순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0,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사전통지)	
7	서울성동아0986	이*희	서울특별시 중구 마장로14길 11, ****(황학동, 위너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수시분)	
8	서울노원자8850	윤*식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44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수시분)	

9	서울중자9953	정*민	서울특별시 중구 난계로 151, *****(신당동, 신당아르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수시분)
10	서울용산차6507	CUI ***GHE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3라길 **** (신당동)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납부독촉)
11	서울중랑타8956	강*만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36길 109, *****(신당동, 현대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과태료 (납부독촉)
12	서울강남타5526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과태료 (납부독촉)
13	서울강남파2963	김*석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7길 256-35, ****(신당동, 남산도현블랑빌)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우편수취함	과태료 (납부독촉)
14	서울중자5702	이*수	서울특별시 중구 서애로1길 34, ****(묵정동, 묵정아파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폐문부재	과태료 (납부독촉)